#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059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9.

발 의 자:정희용·김소희·박성민

김성원 · 안상훈 · 김형동

정동만 · 김위상 · 박덕흠

김태호 · 김예지 · 백종헌

서천호 · 정점식 의원

(14위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·연구 등 연구개발 사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고,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범사업,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 하여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에 관한 조사·연구 등을 연구개 발사업 정의에 포함시켜 효율적인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대응이 필요 하고,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 산업과의 융합 또는 스마트농업 등 현장문제 해결을 위해 대상 사업과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양화 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며, 한국농업기 술진흥원 수행사업에 농업과학기술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. 이에 연구개발사업 정의에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조사·연구 등을 추가하고 시범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농업의 발전과 농촌지역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2호, 제16조제2항 및 제33조제3항제10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아목을 차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아. 농작물 병해충의 분포·발생정도 및 예찰·방제에 관한 조사 •연구
- 자. 그린바이오, 푸드테크, 농업생명공학, 디지털육종, 스마트농업 등 첨단 융복합기술 연구개발

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기준,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3조제3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농업과학기술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연구개발사업"이란 농업ㆍ	2
농업인·농촌과 관련된 과학	
기술을 연구・개발하여 새로	
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	
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	
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	
말한다.	
가. ~ 사. (생 략)	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<u>아. 농작물 병해충의 분포·</u>
	<u>발생정도 및 예찰·방제에</u>
	<u>관한 조사·연구</u>
<u>&lt;신 설&gt;</u>	자. 그린바이오, 푸드테크, 농
	업생명공학, 디지털육종,
	스마트농업 등 첨단 융복
	합기술 연구개발
<u>아.</u> (생 략)	<u>차.</u> (현행 아목과 같음)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시범사업의 실시) (생	제16조(시범사업의 실시) <u>①</u> (현
략)	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
	지정기준, 지정절차 및 지원내

립・운영) ①・② (생 략)

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수행한다.

1. ~ 9. (생략) <u><신 설></u>

<u>10.</u> (생 략)

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
제33조(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 제33조(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 립 · 운영) ① · ② (현행과 같 음)

③ -----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농업과학기술 관련 인재 양 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

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